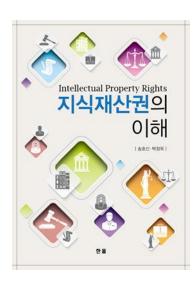
chapter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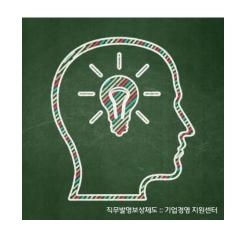
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?





1. 지식재산권의 의미

- 그 대상의 성질 범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짐
 - → "**공업 · 산업**" 단어는
 - 지적재산권이 어느 분야에 쓰이느냐에 따른 구별
 - → "소유권·재산권" 단어는 지재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구별



- 최근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
- -> 즉 "인간의 사고력에 기초한 정신적 창작활동을 통하여 얻어 진 정신적 창조물로써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화를 보호대 상으로 하는 법률상의 권리"로 이해.

2. 지식재산권의 객체

-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즉 객체(크게 두 영역)

첫째 - 산업활동·식별표지 등의 영역

둘째 - 예술·학문·문학 등의 영역

이들 영역에서 정신적 창작활동 결과 발생하는 창작물

- 재산(property)의 개념

종래 : 가구 • 보석 등 동산과

건물・토지 등 부동산과 같은 유체재산(물건)

현대: 첨단의 과학기술산업사회 • 정보화사회로 변화

유형재산의 형태에서

→ 정신적 창작물인 무형의 지식재산 형태로 확장

2. 지식재산권의 객체

- 지식재산(무체재산)은 인간의 사고력에 기초한 지식활동의 결 과로

얻어진 정신적 산물인 무형의 재산이다.

- → **지식**(intellectual) : 인간의 사고력에 기초한 지식이나 지혜 등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며,
- → **재산**(property) :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한다.
- 인간은 사고력에 기초한 지적 활동을 통하여
- → 정신적 위안·쾌락·행복 등을 추구
- → 그 결과 글・그림・음악 등 저작물 형태로 표현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물질의 발명이나 디자인・설계 등 기술의 형태로 나타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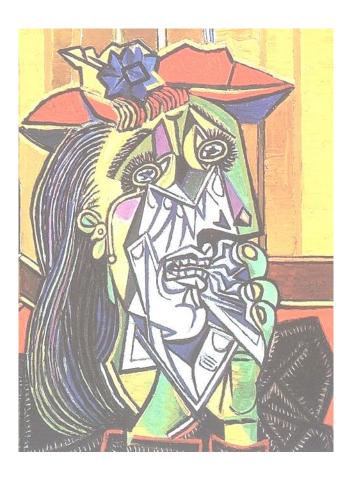




2. 지식재산권의 객체



- 지식재산의 유형
 - ① 예술·문학·음악 등 **문화재산**
 - ② 새로운 발명·고안 등 **산업재산**
 - 1) **직접적으로** 산업에 기여하는 발명·고안·디자인 등
 - 2) 산업의 **질서유지**를 위한 등록상표·서비스마크·상호 등
- 오늘날 유형의 재화보다 무형의 재화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어 지식재산에 관한 비중이 증가하는 실정.



- 3. 지식재산의 보호와 제도
- (1) 보호의 필요성
-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
- → 창작이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,
- → 창작자(기술개발자)를 보호하고,
- → 그 창작발명물(개발기술)을 재산으로서 보호해 줌으로써,
- → 지식재산의 순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다.





3. 지식재산의 보호와 제도



(1) 보호의 필요성

- 기술개발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지만 손쉽게 복제되어 그 이익을 침해당하기 쉽다.
 - → 창작자(발명가) · 기술개발자의 창작 · 발명의 **의욕을 고취**하고, 지속적인 창작 · 기술개발 활동을 위해 **지식재산권을 보호**해야
- 지식재산이 보호될 경우
 - ① 시장에서 독점·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고
 - ② 특허출원 등 등록제도를 통해 권리화함으로써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가능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.

3. 지식재산의 보호와 제도



(1) 보호의 필요성

- 이러한 보호를 통하여

개인: 생활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높이고,

국가: 산업발전과 문화발전 유도

세계: 국제경쟁력 증대

→ 유형의 상품보다는 무형의 지식재산의 개발・확보가 중요



- I. 지식재산권의 의의
- 3. 지식재산의 보호와 제도
- (2) 지식재산제도

현행 **헌법 제22조 2항**

"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"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.

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

- → 물건이나 방법에 대한 **발명**은 **특허법**에서
- → **실용물품**의 **고안**에 대한 **실용신안법**에서
- → 물품의 **디자인**에 대해서는 **디자인보호법**에서
- → 자타 상품의 식별을 위한 **상표는 상표법**에서

이외에도

- → **저작물** 보호를 위한 **저작권법**
- → **컴퓨터프로그램**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**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**
- → **식물품종**에 관한 권리보호를 위한 **종자산업법**
- → 컴퓨터회로배치이용권보호-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
- 3. 지식재산의 보호와 제도
- (3) 일반재산권과의 차이
- 지식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



① 권리범위의 모호성

지식재산권은 유체물에 대한 권리와 달리 그 권리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.

② 침해의 용이성

유체물에 대한 침해 - 직접 물리적인 침해행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- 무형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

-> 권리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용이



3. 지식재산의 보호와 제도

- (3) 일반재산권과의 차이
- ③ 피해의 중대성

지식재산(무형적 자산)이 지닌 가치가 한번 하락하게 되면 다시 그 가치를 회복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.

④ 침해사실 입증의 곤란성

제3자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

그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.





지식재산권 체계

산업재산권	특허권	기술적 창작인 원천·핵심기술(대발명)
	실용신안권	실용적인 생활주변 개량기술(고안: 소발명)
	디자인권	시각적 미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품의 형상·모양
	상표권	타상품과 식별을 위한 기호·문자·도형
저작권	협의 저작권	학문·문학·예술 분야의 창작물
	저작인접권	실연가·음반제작자·방송사업자의 권리
신지식재산권	첨단산업재산권	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·생명공학·식물신품종·인공지 능·영업방법특허(비지니스 모델) 등
	산업저작권	컴퓨터프로그램·데이터베이스·디지털콘텐츠 등
	정보재산권	영업비밀·멀티미디어 등
	상표/디자인 관련	캐릭터·트레이드 드레스(Trade Dress)·프렌차이징·프 블리시티권(Publicity Right)·타이프 페이스(Type face)·지리적 표시·인터넷 도메인이름·새로운 상표(색 채상표·입체상표·소리상표·냄새상표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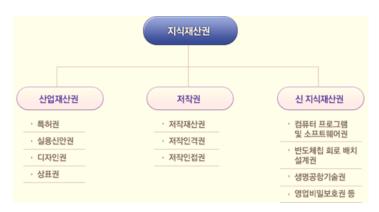
1. 전통적 유형

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

- ① **산업재산권**은 사람의 물질문명에 기여하는 발명·고안·식별표식을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보호 등에 관한 권리이며,
- ② **저작권**은 정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문학 · 예술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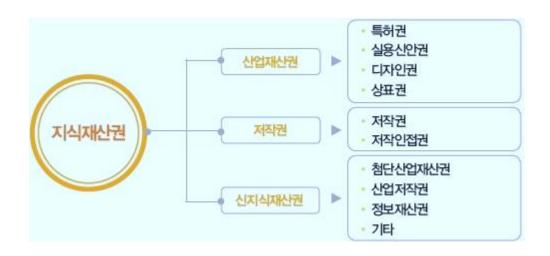
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

- ① 산업재산권 : 특허권・실용신안권・디자인권・상표권 등
- ② 저작권: 저작권(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)과 저작인접권 등이 있다.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
산업재산권은 다시 발명·고안·디자인 등의 **창작물에 대한 권리**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영업을 식별하고자 하는 상표로 구별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- 특허권(patent)은 "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"(특§94).
- -> 즉 새로운 기술적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.
- 기술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여러 산업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.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- 물질특허·제법특허·용도특허 등의 용어는 특허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의 출원시 '청구의 범위란'의 소항목들로 '청구항'에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**내용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다**.
- 예컨대 의약품에 대한 **새로운 물질**을 발명 : 물질특허 인정 그 의약품의 **새로운 효능**이 발견되었다면 : 용도특허가 인정 당해 의약품을 **만드는 방법**을 새롭게 개발했다면 : 제법특허가 인정 그 의약품의 효과와 복용상 간편성 개선 위해 **새로운 제형** (예컨대 액상, 캡슐, 주사 등)을 만들었다면 : 제형특허가 인정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물질특허(product patent) : 그 물질자체를 권리의 대상으로 하는 특허.

→ 동일물질에 대하여는 그 제법 · 용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물질특허가 인정될 뿐이다.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용도특허(use patent): 특정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만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에 인정되는 특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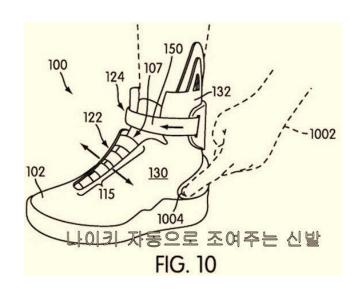
→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조방법 · 용도가 있는 경우 각기 별도의 제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인정된다.

예컨대) 비아그라 → 물질특허 2012년 5월 만료 용도특허 2014년 5월 만료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제법특허(process patent) :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제형특허 :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발명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1) 특허권



- -> 새로운 제법이나 용도를 발명하면 그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
- 물질특허도 함께 인정하는 법제에서는
- -> 그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제법특허나 용도특허 등의 독자적인 사용 또는 실시가 불가능 물질특허에 종속된다.
- 현재 우리는 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물질특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.





II. 지식재산권의 종류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2) 실용신안권
- 실용신안권은 "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•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"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(실용신안법 제2조. 제4조).
- → 즉 새로운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그 고안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•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권리이다.



1. 전통적 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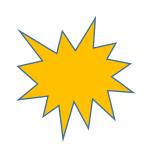
- 2) 실용신안권
- 특허와 이동

동일점 -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는 점

차이점 - 그 발명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

→ 실용신안을 "작은 발명"이라 하여 주로 상품의 형태 • 구조 • 결합에 관한 기술적 창작("고안")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2) 실용신안권
-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"고안"은 특허권의 대상인 "발명"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뚜렷한 구별이 어렵다.
 - → "실용신안권을 인정하지 말자"는 견해도 상당 현재 우리나라・일본・이탈리아 등 10여개국만 실용신안권을 인정.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3) 디자인권(industrial design)

디자인권은 **상품의 형상 · 모양 ·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**으로써 **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고안**을 등록한 자가 그 디자인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(디자인보호법 제2조 · 제5조).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3) 디자인권(industrial design)
 디자인은 정신적 창조물이지만 발명이나 실용신안과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 아니고
 "시각적 미감"을 느끼게 하여 상품

의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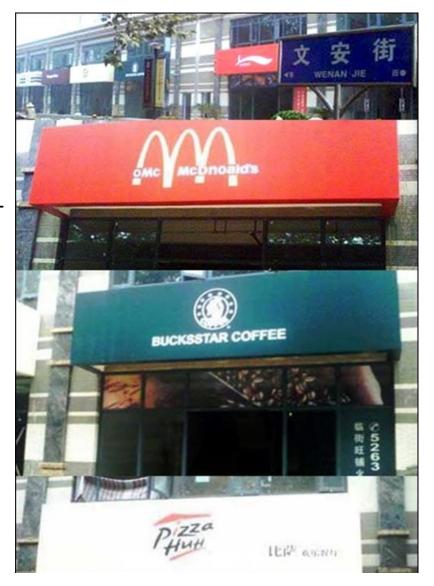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- 상표권(trademark)은 "**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** 문자·도형·기호·색체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" 이다.
- 상표는 **식별표식**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인 발명과 다르다.
- 상표권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·성능 등 우수성을 보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작용도 한다.

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- 같은 산업재산권인 **특허권·실용신 안권**은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이 며 진보적인 **기술**을 그 대상으로 하는 데
- **상표권**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**상징**을 대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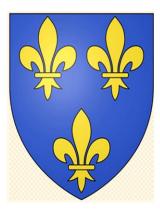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
또한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써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기도 하다.









- 1. 전통적 유형
- (1) 산업재산권
- 4) 상표권
- 상표와 상호는 구별된다.
- **상호** : 영업상의 활동에서 **상인을 표창하는 명칭** 하나의 명칭이므로 **문자로 구성되어서 호칭될 수 있어야**
- 상호는 도형이나 기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.
 상호는 영업자체를 표시하는 영업표나,
 상품을 직접 표창하는 상표와는 다르다.
 상호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보호









1. 전통적 유형

(2) 저작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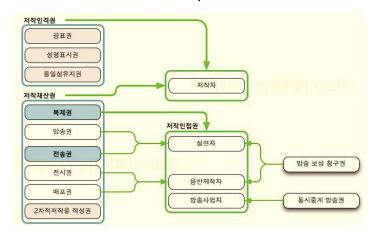
- 저작권(Copyright)은 학문·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
- 저작권의 대상은 사람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로서 논문·도서·음반·그림·사진·악보·조각물 등이다.
-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출판·반포·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 등의 권한을 일정한 존속기간(최대 사후 70년) 동안 독점적·배타적으로 가지게 된다.



1. 전통적 유형

(2) 저작권

-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특징으로 한다.
- →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인 **저작인격권**이 인정되고
- 재산적 가치를 지배하는 **저작재산권**을 인정한다.
- → 저작재산권으로는 저작물의 복제권・공연권・방송권・전시권・배포권을 비롯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한다.
- 또한 저작물의 실연,음반제작,방송사업에 대하여는 **저작인접권**을 인정 저작인접권은 그 보호기간이 저작권보다 짧은 것이 보통 저작인접권으로는 실연자 권리, 음반제작자 권리, 방송사업자 권리



수고 하셨습니다.